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시 보

제737호 2020. 9. 15.(화)

【공 고】

제2020-1836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3

제2020-1844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제2020-1845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제2020-1856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 완료 공고 ··· 33

제2020-1868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5

제2020-1891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3

제2020-1898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 57

【고 시】

제2020-1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4

제2020-15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69

제2020-154호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고시 ··· 73

제2020-157호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사현1리 마을 만들기 사업) ··· 75

제2020-158호 시도개설 허가 고시 ··· 77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0-1836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비치장소 (안 제5조 ~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15. ~ 10. 6. (22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053 / FAX : 041-840-2439

5.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 041-840-805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활동 시설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비치장소)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용(專用) 이용공간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1844 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설립 목적인 전통국악 보급·교육 기능에서 최근 전통 공연 중심의 주요 기능 변화로 현실과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문 변경

- 제 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문변경 : 제1조 ~ 제6조, 제8조 ~ 제10조, 제17조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국악원’ → ‘국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
‘원장’ → ‘예술감독’, ‘예술감독 ’→ ‘상임지휘자’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7.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43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041-840-824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원","국악원"을 "공주시 충남국악단","국악단"으로 하고, 2호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3조 중 "국악원" 및 각 호"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4조 중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항 1호, 제9항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의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하고, 제2항의 "예술감독"을 "상임지휘자"로 한다.

제6조 제1항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전형위원회"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제2항 "국악원", "원장"을 "국악단","예술감독"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비상임원장"을 "비상임예술감독"으로 한다.

제9조제1항6호,9호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하“국악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원장·악장·상임단원·비상임단원·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구성)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이하“국악단”이라 한다) ---- ------------------------------ ---. 1.------------------------------------ 국악단 -------- ----. 2.----예술감독·------------- -- -----.
제3조(운영계획)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	제3조(운영계획) ------------- --------------------국악단의 -------------------------.

1. 국악원의 활동 계획 2. 국악원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국악단 --------- 2. 국악단 --------------- 3. ------------- 국악단----- -------------------------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원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④ (생 략) 1. 국악원 업무부서의 장 2. ~ 4. (생 략) ⑤ ~ ⑧ (생 략)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원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국악단-- ---------------------------- ---------------------------- ----------------------------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악단-------------- --. ④ (현행과 같음) 1. 국악단 ----------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 국악단---------------.
제5조(직무) ① 단장은 국악원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ㆍ악장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	제5조(직무) ① ----- 국악단-- ----------. ② ------------------------- -예술감독---------------- ------------------------- -------------------------

③ 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하며, 국악원 공연과 강습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관리·감독을 수행 한다.	③ 예술감독---상임 지휘자-----, 국악단 ---.
④ 악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 예술감독 --------, 예술감독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요원은 국악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⑥ ------ 국악단------------------------------.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第6조(위촉)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第6조(위촉) ①--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의 ------------------.
1. 원장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예술감독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예술감독---------
② 시장은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장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 국악단 --------------------예술감독 -------------------.

제7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① (생 략)	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 ------------------------ ------------------------. ---,예술감독 ------------- ------------------------ ---.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비상임원장의 정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③ ------------------------ ------------------------. --, 비상임예술감독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촉해제 등) ① (생 략)	제9조(위촉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악원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국악단 ---------------- --------------------
7.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국악원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9.---- 국악단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형위원회)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 ---------.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② ----------------------- ------------------------ ------------------------

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 ----------------예술감독- ------------------------ ----.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과 동일)
제17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지원) ----- 국악단-- ---------------------------- ---------.
제18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동일)

공주시 공고 제2020-1845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설립 목적인 전통국악 보급·교육 기능에서 최근 전통 공연 중심의 주요 기능 변화로 현실과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명 및 관련조문 변경

- 제 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문변경 :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국악원' → '국악단', '비상임원장' → '비상임예술감독', '원장' → '예술감독'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운영위원회’

- 별지별표 : [별표1] ~[별표2], [별표6]~[별표7], [별표9], [별표11]~[별표12], [별지1], [별지4]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원장’→ ‘예술감독’, ‘비상임원장’ →‘비상임예술감독’,‘국악원’→‘국악단’

3. 입법예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7. (22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43 FAX : 041-840-3708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041-840-824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하고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4조 9호부터 13호까지 '국악원'을 '국악단'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비상임 원장"를 "비상임 예술감독"이라 하고, 제3항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원장"을 "예술감독"으로 "비상임원장"을 "비상임예술감독"으로 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운영위원회"로 한다.

[별표1]~[별표2],[별표4],[별표6]~[별표7],[별표9],[별표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1호서식],[별지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시행계획수립) 단장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악단 운영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수립)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국악단 ---.
제4조(운영요원의 직무) (생 략) 1.~ 8. (생 략) 9. 국악원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기타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0. ~ 11. (생 략) 12. 국악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요원의 직무) (현행과 동일) 1.~ 8. (현행과 동일) 9. 국악단 --- 10. ~ 11. (생 략) 12. 국악단 ------------------

13. 그 밖에 제반 국악원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3. -------- 국악단-------- ---------------------
제5조(직무) (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단원은 주 3일, 비상임 원장은 주2회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다. 다만, 주 근무일수를 초과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장소에서 연습이나 강습을 명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6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② ----------------------- ----------------- 비상임 예술감독------------------ -----------------------. - ----------------- ③ 예술감독 -------------- ------------------------- ------------------------- ------------. ④ ~ ⑦ (생 략)
제7조 ~ 제13조 (생 략)	제7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운영위원회에서 대행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징계) ① ----------- ------------------------- ------------------------- ------------------------- -------------------------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운영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강료) (생 략)	제15조(수강료)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정원 및 직위 기준

직책		정원(명)
계		23
원 장		1
악 장		1
수석단원		2
차석단원		2
상임 및 비상임단원		15
운영요원	사 무 장	1
	사무원(공연지원)	1

[별표 2]

초임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

구 분	월 지 급 액	비 고
원 장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호봉	
악 장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차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상임단원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호봉	
신규단원 및 사무원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호봉	※ 2년후 자동승급
사무장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별표4]

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월)	비　　고
원　　　장	400,000	월별 정산에 의해 후불지급
사 무 장	100,000	

[별표6]

비상임단원의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수당 월지급액	휴일근무수당
비상임단원	일반직공무원 9급1호봉의 70%지급	80,000원
비상임원장	일반직공무원 5급10호봉의 70%지급	160,000원

[별표7]

직책 및 예능연구 수당등 지급기준

직책(등급)	지 급 액/월	비고
원장	250,000원	운영요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악장(1)	200,000원	
수석단원(2)	150,000원	
차석단원(3)	140,000원	
일반단원(4)	130,000원	
일반단원(5)	120,000원	

[별표9]

여비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원　　장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악장, 단원, 운영요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별표11]

평가방법·등급 및 기준

<table>
<tr><td rowspan="4">실
기
평
가
(70점)</td><td>단 원</td><td rowspan="2">평가위원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의 평균점수</td></tr>
<tr><td>평가자 : 평가위원</td></tr>
<tr><td>운영요원</td><td rowspan="2">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업무 수행도의 평가 점수 합의 평균점수</td></tr>
<tr><td>평가자 : 부단장, 원장, 악장, 국악원 업무 팀장</td></tr>
</table>

<table>
<tr><td rowspan="7">근
무
평
가
(30점)</td><td colspan="2" rowspan="2">출결평가
(6점)</td><td colspan="4">근무태도(14점)</td><td colspan="2" rowspan="2">경력평점
(10점)</td></tr>
<tr><td colspan="2">평가자 : 부단장</td><td colspan="2">평가자 : 원 장</td></tr>
<tr><td rowspan="2">무단결근
(감점)</td><td rowspan="2">1</td><td rowspan="5">■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규정준수
기여도
참여도</td><td rowspan="5">7점</td><td rowspan="5">■평가항목
곡해석능력
<업무능력>
연주태도
<근무태도>
개인기량
공동체 참여도
< >는 운영요원</td><td rowspan="5">7점</td><td>15년이상</td><td>10</td></tr>
<tr><td>10년이상~15년미만</td><td>8.5</td></tr>
<tr><td>지각
(감점)</td><td>0.3</td><td>5년이상~10년미만</td><td>7</td></tr>
<tr><td rowspan="2">병가
(감점)</td><td rowspan="2">0.1</td><td>1년이상~5년미만</td><td>5.5</td></tr>
<tr><td>1년미만</td><td>4</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평
가
등
급</td><td>분류</td><td>기준점수</td><td>평가조치</td></tr>
<tr><td>1등급</td><td>1위(단 경력 10년 이상)</td><td>악장</td></tr>
<tr><td>2등급</td><td>1등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5년 이상)</td><td>수석(2명)</td></tr>
<tr><td>3등급</td><td>1~2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3년 이상)</td><td>차석(2명)</td></tr>
<tr><td>4등급</td><td>70점이상</td><td rowspan="2">단원</td></tr>
<tr><td>5등급</td><td>60점이상~70점미만</td></tr>
<tr><td>6등급</td><td>60점미만</td><td>위촉해제</td></tr>
<tr><td colspan="3">※ 운영요원은 단원의 기준점수와 비교하여 등급을 정함, 다만 점수가 등급 중간에 위치할 경우 등급간 점수를 1/2하여 가까운 쪽에 등급을 정함</td></tr>
</table>

※ 평가등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경력평점 고점자,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분 야 :
직 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예술인으로서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국악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단원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단장의 요구하는 공연과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함은 물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신분증

(전면)

사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후면)

No. 001
단 원 증
소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직책 : 단원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20 . . .
공 주 시 장
전화 :

※ 증명서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개정안>

[별표 1]

정원 및 직위 기준

직책		정원(명)
계		23
예술감독		1
악 장		1
수석단원		2
차석단원		2
상임 및 비상임단원		15
운영요원	사 무 장	1
	사무원(공연지원)	1

[별표 2]

초임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

구 분	월 지 급 액	비 고
예술감독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호봉	
악 장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수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호봉	
차석단원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상임단원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호봉	
신규단원 및 사무원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호봉	※ 2년후 자동승급
사무장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호봉	

[별표4]

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월)	비 고
예술감독	400,000	월별 정산에 의해 후불지급
사 무 장	100,000	

[별표6]

비상임단원의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수당 월지급액	휴일근무수당
비상임단원	일반직공무원 9급1호봉의 70%지급	80,000원
비상임예술감독	일반직공무원 5급10호봉의 70%지급	160,000원

[별표7]

직책 및 예능연구 수당등 지급기준

직책(등급)	지 급 액/월	비고
예술감독	250,000원	운영요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악장(1)	200,000원	
수석단원(2)	150,000원	
차석단원(3)	140,000원	
일반단원(4)	130,000원	
일반단원(5)	120,000원	

[별표9]

여비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예술감독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악장, 단원, 운영요원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별표11]

평가방법·등급 및 기준

<table>
<tr><td rowspan="4">실기평가
(70점)</td><td colspan="3">단 원</td><td colspan="5" rowspan="2">평가위원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의 평균점수</td></tr>
<tr><td colspan="3">평가자 : 평가위원</td></tr>
<tr><td colspan="3">운영요원</td><td colspan="5" rowspan="2">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업무 수행도의 평가 점수 합의 평균점수</td></tr>
<tr><td colspan="3">평가자 : 부단장, 예술감독, 악장, 국악단 업무 팀장</td></tr>
<tr><td rowspan="7">근무평가
(30점)</td><td colspan="2" rowspan="2">출결평가
(6점)</td><td colspan="4">근무태도(14점)</td><td colspan="2" rowspan="2">경력평점
(10점)</td></tr>
<tr><td colspan="2">평가자 : 부단장</td><td colspan="2">평가자 : 예술감독</td></tr>
<tr><td rowspan="2">무단결근
(감점)</td><td rowspan="2">1</td><td rowspan="5">■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규정준수
기여도
참여도</td><td rowspan="5">7점</td><td rowspan="5">■ 평가항목
곡해석능력
<업무능력>
연주태도
<근무태도>
개인기량
공동체 참여도
< >는 운영요원</td><td rowspan="5">7점</td><td>15년이상</td><td>10</td></tr>
<tr><td>10년이상~15년미만</td><td>8.5</td></tr>
<tr><td>지각
(감점)</td><td>0.3</td><td>5년이상~10년미만</td><td>7</td></tr>
<tr><td rowspan="2">병가
(감점)</td><td rowspan="2">0.1</td><td>1년이상~5년미만</td><td>5.5</td></tr>
<tr><td>1년미만</td><td>4</td></tr>
<tr><td rowspan="8">평가등급</td><td colspan="2">분류</td><td colspan="4">기준점수</td><td colspan="2">평가조치</td></tr>
<tr><td colspan="2">1등급</td><td colspan="4">1위(단 경력 10년 이상)</td><td colspan="2">악장</td></tr>
<tr><td colspan="2">2등급</td><td colspan="4">1등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5년 이상)</td><td colspan="2">수석(2명)</td></tr>
<tr><td colspan="2">3등급</td><td colspan="4">1~2급 제외 후1~2위(단 경력 3년 이상)</td><td colspan="2">차석(2명)</td></tr>
<tr><td colspan="2">4등급</td><td colspan="4">70점이상</td><td colspan="2" rowspan="2">단원</td></tr>
<tr><td colspan="2">5등급</td><td colspan="4">60점이상~70점미만</td></tr>
<tr><td colspan="2">6등급</td><td colspan="4">60점미만</td><td colspan="2">위촉해제</td></tr>
<tr><td colspan="8">※ 운영요원은 단원의 기준점수와 비교하여 등급을 정함, 다만 점수가 등급 중간에 위치할 경우 등급간 점수를 1/2하여 가까운 쪽에 등급을 정함</td></tr>
</table>

※ 평가등급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우선순위는 경력평점 고점자,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분　　야 :
직　　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창의와 노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예술인으로서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국악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단원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 단장의 요구하는 공연과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함은 물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신분증

(전면)

사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후면)

No. 001
단 원 증
소속 :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직책 : 단원
성명 : 홍길동
생년월일 :
20 . . .
공 주 시 장
전화 :

※ 증명서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공주시 공고 제2020-1856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완료공고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번지 일원의 국토정보교육원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명 칭 : 국토정보교육원 신축공사

3. **시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4. **사업내용**

(단위 : ㎡)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139,484.4	❍ 국토정보 교육원 신축공사 1식 (세부내용 관련도서 참조) - 건축면적 : 8,659.19㎡

5. 사업기간 : 2014. 02.(인가일) ~ 2020. 08. 06.

6. 준공 토지조서

구분	지번	지목	공 부 면적(㎡)	편 입 면적(㎡)	토 지 소 유 자		산지 구분	비고
					성명	주 소		
합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9,484.4	139,484.4	한국국토 정보공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중동)		사유지
1	628	대	86,613.4	86,613.4	〃	〃		〃
2	629	임	52,871.0	52,871.0	〃	〃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공주시 공고 제 2020-1868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나.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안 제3조)

❍ 증지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전화 : 041-840-8356, FAX : 041-840-2318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증지”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보관) 시에서 충청남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이를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각 부서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를 삭제한다.

[별표]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5조 제1항 관련)

가. 규격 : 가로 2.7㎝, 세로 3.0㎝

나. 모양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

▪ 전자수입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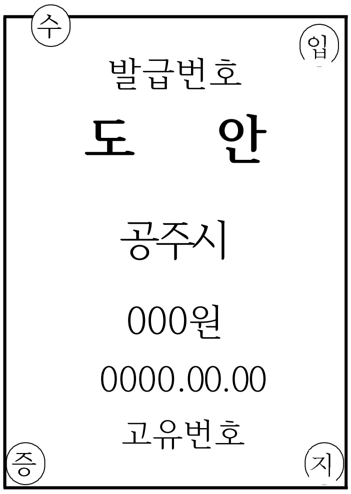

※ 인영색상 : 녹색

▪ 무인민원발급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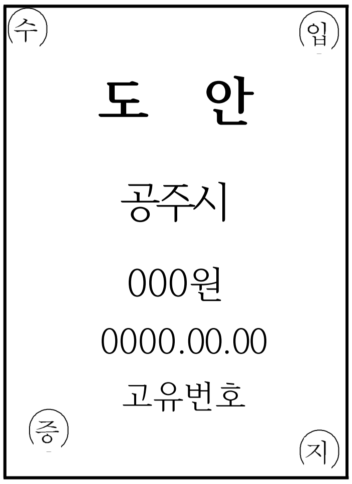

※ 인영색상 : 검은색

[별지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담당자	팀 장	부서장	결 재

■ 발행일:

■ 계기 고유번호:

□ 발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발 행 액(수입)						결손액	
	계(A+B)		현금(A)		카드(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 발행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실제 발행금액 / 결손은 증빙자료 별도첨부
※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과목	금일 불입액				불입액 누계	
	금일수입		카드대금수입 (C)	**금일불입액 (D=A+C)**	전일까지 불입액(E)	금일까지 불입액(D+E)
	현금(A)	카드(B)				
증지수입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공주시 공고 제2020-1891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신기술 발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당직근무 제도 개선 요구

○ 읍·면·동 당직근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및 직원 권익보호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읍·면·동 당직근무 제도 개편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읍·면	재택	**일직 후 재택**	재택	**재택**	제6조제4항
동	**3시간대기 후 재택**	재택	**자율형 재택**	재택	제6조제5항제3호

○ 재택근무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 당직근무 상태 점검 강화(제21조제2항, 제3항)
- 재택당직 근무자의 임무 강화(제26조제5항, 제30조)

❍ 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 대기근무 폐지(제17조, 제18조, 제19조 삭제)

❍ 당직근무 변경의 책임을 부서장에서 당직근무자로 변경(제7조제2항)

❍ 용어 정비

-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 규정의 토요일 삭제(제3조제3호)
- 토요일을 공휴일과 별도 표기(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 조직개편시 미반영된 부서명칭 현행화(제6조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1호)
- 무기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제36조제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5. ~ 2020. 10.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교류능률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연락처 : 041-840-2589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교류능률팀 (☏ 041-840-258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를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제6조제5항 중 “환경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옥마을팀”을 “휴양사업소”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다만, 숙직의 경우 운전원은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단장”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한다.

①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본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호 중 "무기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2 (생 략) 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 략)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생 략)	제4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②、③ (생 략) ④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운영팀, 문화시설사업소(웅진관), 동의 경우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일직을 두지 않으며, 법정공휴일(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은 재택일직을 실시한다.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토요일 및 공휴일-----------------.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자원과(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팀은 제외한다. 1ㆍ2 (생 략)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운영팀, 종합사회복지관, 동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시립도서관과 읍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 자원순환과-----------, -----------------------, 휴양사업소는---------. 1ㆍ2 (현행과 같음) 3. ------------------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 략) ② 소속 담당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 당직근무일의 ---------------.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종료시 당직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토요일 및 공휴일--- ------------------------------ -. ② ---------------------------- ------------------------------ ------------------------------ ------------------------------ ----------------------- 토요일 및 공휴일---------------------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생 략) ②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 제외)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의 경우 운전원은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삭 제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생 략)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국장 、단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당직업무담당주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삭제> ---------------------- ------------------------------ ------------------------------ ------------------------------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 략)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부시장、시민국장、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급보하고, 시청 당직실에 보고)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시민자치국장-------------------- ------------------------------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시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차례를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제17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 삭 제 >

대기근무하되, 근무 방법 등은 시장이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임무) ①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서의 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임무) < 삭　제 >
제19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 근무지 비품)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근무지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감독관 근무일지 2. 기관의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	제19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 근무지 비품) < 삭　제 >

요한 물품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본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및 업무연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른 보고 및 지시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황파악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신 설>	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생 략) ②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관리 부서에서 인수한 비품 및 전날 주요사항 등을 그날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요일 및 공휴일--.

제28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재택당직 비품) < 삭 제 >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 내 모든 담당관․과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하여금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장 요원(현업부서근무자) 2.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 1. ------------------------ 2. 공무직근로자 --------

공주시 공고 제2020-1898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명의 부여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9. 15.(화) ~ 9. 29.(화)

2. **공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게시판 및 읍.면.동 게시판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조서 (별첨)

4. **의견제출**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0. 9. 15.(화) ~ 9. 29.(화)

   나. 방 법 : 직접방문, 우편제출

   다. 장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6.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절차

주민의견수렴공고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후 ⇒ 10일 이내	도로명부여 고시
14일 이상		생략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심의종료 10일이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1-840-8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예비)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쌍신생태공원 자전거길	길	20	3	1.7	도면 참조	쌍신동 403번지	신관동 582번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예비)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의당면	정안천자전거길	길	20	3	2.6	도면 참조	신관동 582번지	의당면 청룡리 918번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예비)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금강신관공원자전거길	길	20	3	3.5	도면 참조	신관동 553번지	신관동 553번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도로명 부여 조서

일련번호	도로명	관련지번	
		시　　점	종　　점
1	쌍신생태공원 자전거길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03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2번지
2	정안천 자전거길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2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918번지
3	금강신관공원 자전거길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table>
<tr><td colspan="4">의 견 제 출 서</td></tr>
<tr><td rowspan="2">의 견
제 출 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r>
<tr><td>② 주 소</td><td colspan="2">(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도 로 명
및
도 로 구 간</td><td>③ 도 로 명</td><td colspan="2"></td></tr>
<tr><td>④ 도로구간</td><td colspan="2"></td></tr>
<tr><td>제 안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4">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840-8478, FAX: 840-2421)</td></tr>
<tr><td colspan="3" rowspan="2">※ 구비서류
의견 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td><td>수수료</td></tr>
<tr><td>없 음</td></tr>
</table>

공주시 고시 제2020-15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사봉로 175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358-2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사봉로 175	2020 0902	신규	2010 0112	견동~국동 가는 길에 국사봉이라는 큰 봉우리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사봉로라 부여	고시후공문발송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73-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140	2020 0902	신규	2010 011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25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로 95	2020 0902	신규	2010 0112	송학리를 대표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54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228-8	2020 0902	신규	2010 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85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143 (월송동)	2020 0902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205-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505-27	2020 0902	신규	2010 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98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680	2020 0902	신규	2010 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687	충청남도 공주시 백제문화로 2077 (웅진동)	2020 0902	신규	2009 0825	백제의역사 문화성 반영	
9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198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55 (상왕동)	2020 09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5-140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8-25 (상왕동)	2020 09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83-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가마봉길 67	2020 0902	신규	2010 0112	산의 봉우리가 가마 모양과 같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537-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순길 168	2020 09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느라시길 97	2020 0902	신규	2010 0112	예전부터 느러지게 넓다 하여 느랒이라 불린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591-3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대룡조평길 734	2020 0902	신규	2010 0112	대룡리와 조평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두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313-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대장길 56	2020 0902	신규	2010 0112	예부터 이 지역을 대장 또는 하대장이라 불리운다 하여 대장길이라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43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길 154	2020 09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286-12, 286-1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길 118-12	2020 0902	신규	2010 0112	만천리를 관통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만천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리 14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반촌길 51-3	2020 0902	신규	2010 0112	반촌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반촌길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66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방죽골길 50-44	2020 09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52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상정안동막길 153	2020 0902	신규	2010 0112	상정안이란 마을과 동막골이란 두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상정안동막길로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9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수실2길 34	2020 09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공문발송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198-17, 98-18	충청남도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30 (금학동)	2020 0902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42-1, 4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어물음지말길 44-8	2020 09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과 행정구역 명칭 복합 반영	
2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184-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용성길 78-2	2020 0902	신규	2010 0112	용성리를 대표하는 주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29-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2길 31	2020 0902	신규	2010 0202	남쪽에 있는 동원이 원골의 작은마을이라 하여 작은골2길로 부여	
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9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2길 80-3	2020 0902	신규	2010 0202	일련번호방식과 도로특성 반영	
2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304-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평정길 345-13	2020 0902	신규	2010 0112	화봉리와 평정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두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화봉평정길로 부여	

공주시 고시 제2020-15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마곡사로 348-5 외 3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정안면 월산리 356-2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348-5	9.2	허가과-47761(20.8.14)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2	이인면 이곡리 198	이인면 배실길 23-7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	탄천면 남산리 702-2	탄천면 안골길 50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	금학동 200-16	수원지공원길31-5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	금흥동 234-1	금흥평골길20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6	반죽동 313-1	봉황로62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7	반죽동 249	제민천1길75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8	산성동 74-11	무령로25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9	송선동 537-1	송선농공단지길13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0	신관동 505-1	치미마을길24-23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1	쌍신동 447	쌍신길234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2	쌍신동 221	쌍신길143-7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3	쌍신동 산 3-5	하신길69-9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4	웅진동 178	시어골1길124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5	월미동 111-1	송산길17-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6	정안면 장원리 119	둠벙이골길3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7	탄천면 남산리 산 128-13	됨박골길5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8	탄천면 분강리 133	분창양달길7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9	탄천면 남산리 460-8	산골2길1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0	탄천면 안영리 241-3	산제당길6-14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1	탄천면 남산리 192	송정2길63-3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2	탄천면 안영리 261-2	월곡안말길86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3	신풍면 동원리 369	원골예술길114-7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4	우성면 목천리 680-2	목천1길20-9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5	우성면 옥성리 320	옥성길344-32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6	우성면 내산리 513	정사골길37-12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7	유구읍 덕곡리 141-1	덕곡당골길103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8	유구읍 명곡리 429-6	명곡1길318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9	유구읍 구계리 77	산막1길128-5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0	의당면 청룡리 361-3	돌모루1길3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31	의당면 청룡리 산 78	와룡동길58-48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2	의당면 요룡리 164-5	요골길34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3	의당면 가산리 187-5	의당전의로911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4	이인면 달산리 산 3-1	검바위로3-35	9.2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5	공주시 태봉동 426-7	공주시 강정자2길 13	9.2	허가과-50629(20.8.29)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공주시 고시 제2020-154호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유구천 일원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시행한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공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지구 구간에 대해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주택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며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개요 : 하천정비 L=11.8km(양안), 교량 3개소, 구조물공 77개소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유마교) ~ 신풍면 동원리 일원 / 유구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공주시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15. 02. 11

나. 준공 : 2018. 09. 0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

(사유 : 편입된 토지는 매입하여 도유지화 하였음으로 게재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 : 공주시 시민안전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8조 및 제27조제5항에 의함.

공주시 고시 제2020-157호

고 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현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사현1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1리 일원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공동주차장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교육, 컨설팅, 제경비 등

4. 사업비 소요액 : 470백만원 (국비 35, 시비 435)

5.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6. **사업의 효과 :**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세부사업명 (사업별)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읍면	리				
공동주차장 조성	정안면	사현리	236-2	전	747	유**
	정안면	사현리	235-3	대	48	박**
	소계				795	

9.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041-840-8248)

고시 제2020-158호

사도개설 허가 고시

「사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도개설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피허가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번길 **
	성 명(명칭)	김 * 원
개 설 목 적		태양광 발전시설 진출입로
허 가 위 치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 229-5번지 외 16필지
사 도 규 모		도로의 길이 L = 390.89m, 폭 B= 6.0m